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은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6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이은림 의원(1명)
찬 성 자: 곽향기, 김춘곤, 박·석,
박성연, 박중화, 윤영희,
이민석, 이성배, 이종환,
최진혁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 2천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(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, 보건복지부)가 나올 정도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.
- 또한,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적평가를 의무화하고,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나.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
2.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
3.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

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

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</p>	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2.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 3.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<p>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</p>

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비용의 지원)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	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	243,145,153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4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~12월(연례반복)
- 지원대상 :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(공익활동 기준)
- 지원기준 : 1인당 활동수당 월 29만원, 부대경비 연 18만원(공익활동 기준)
 -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변경
- 추진방법 :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추진
- 재원비율 : 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
- 소요예산 : 243,145,153천원 (국비 112,130,424천원, 시비 131,014,729천원)